●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972

Ⅰ. 동의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질 향상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의 공공보건 의료정책 수립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단 운영 경비 출연 필요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0년 예산(안) : 4,110,340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내역	2020년 예산(안)
합 계	**4,110,340**
인건비	2,137,627
운영비	1,429,713
사업비	543,0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예산조치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요서 1부.
2. 2018회계년도 결산 이사회 회의록 1부.
3. 2018년 결산보고서 1부.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김문희(☎ 2133-7514)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1] 및 같은 법 제18조제3항[2]에 의거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출연이 가능하며 이에 2020년 세출예산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2 공공보건의료재단 일반현황

가.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 재단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 등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생략)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범위[3)]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

○ 재단은 3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하에 공공의료정책부, 병원경영지원부, 지역보건사업부의 3부가 존재하며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1실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과 비교하여 재단의 조직변동은 없으며 일부 인사이동만 존재하였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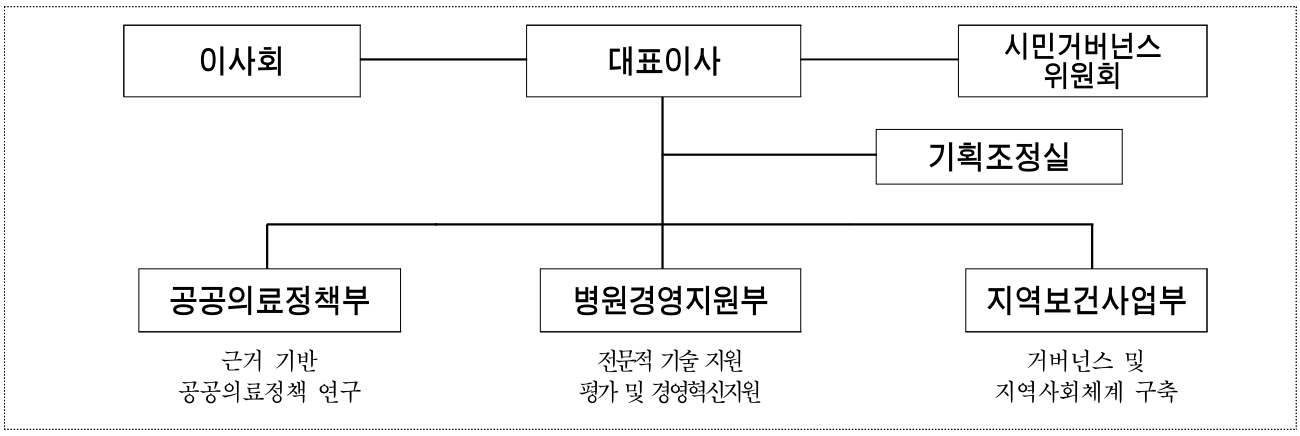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조와 동일.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공공의료정책부는 정책연구 및 사업평가와 교육훈련이 주된 내용이며 병원경영지원부의 경우 시립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혁신지원, 컨설팅과 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건부의 경우 거버넌스 확장, 전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의 경우 재단의 행정적인 부분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공공의료정책부	○ 건강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연구, 빅데이터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병원경영지원부	○ 시립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평가 및 컨설팅 · 경영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관련 통계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건부	○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내 · 외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 자원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분야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중심 사업 개발 및 보급 ·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 중장기 전략기획, 경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직 · 인사 · 노무·복무·직원평가·후생복지·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 자금 및 기금 운용, 예산집행 및 결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인력을 살펴보면 현재 정원은 30명으로 나타나며 현원은 29명으로 1명의 부족 상태에 있음.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등급의 직제를 운영하고 있음. 2018년 같은 시기에 현원은 24명으로 2019년에 5명이 보충된 것

으로 나타남.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현원표

(단위 : 명, '19. 7월 현재)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30	1	4	4	5	8	8
현원(전체)	29	1	3	3	6	8	8
현원(연구직)	23	-	3	2	5	6	7

다. 예산과 관련하여

○ 재단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이 됨. 출연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액은 41억1천만원으로 인건비 21억 3천만원, 운영비 14억 2천만원, 사업비 5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추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출연동의안의 의결여부와는 관계없이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적절한 사업비의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액은 총 48억4천만원으로 인건비 17억9천만원, 운영비 11억 3천만원, 사업비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때 서울시의 출연금은 35억6천만원이었고, 이익잉여금(2018년에서 이월된)은 12억8천만원이었음.

3 출연안의 타당성

가.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하고자 한다면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짐.

나. 중기 재정계획 반영여부

○ 예산의 의결액을 정하는 안건은 아니나 서울시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계획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임.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가 예산편성에의 구속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본 안건 심의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액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물가상승이나 재단의 확대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5년간 같은 액수의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방향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씽크 탱크를 운영하는

방식이 모형화 될 가능성 있음.

<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예산액	3,502,864	3,502,864	3,502,864	3,502,864	3,502,864	17,514,320

※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출연금만을 의미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290회 정례회에 제출될 시민건강국의 세출예산안 편성이전에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의미하며 예산액을 정함이 아닌 예산편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목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의지를 보이는 점, 집행부가 성실하게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동의안의 의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음.